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

제정 2016.08.23.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자원정책과-1826

개정 2018.02.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325

개정 2025.10.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173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원인제공자의 요청에 의해 전기통신설비를 이전하는 공사(이하 "이전공사"이라 한다)에 대한 대상설비·절차·방법·비용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원인제공자의 요청으로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설계"란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示方書),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감리"란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사원가”란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6. “일반관리비”란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을 말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0조의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7. “이윤”이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단, 이윤율은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 “기간통신사업자”란 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 “원인제공자”란 토지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로 토지 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 등의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전기통신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자를 말한다.
11. “전문기관”이란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을 위해 산출한 공사비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한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12.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 및 제2장에 따라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4조(설비이전 대상) 통신설비 이전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전주(IP주, 콘크리트주, 강판주 등)
2. 케이블류(광, 동, 광·동축 등과 부대설비를 포함한다)
3. 관로(내관, 외관 포함), 맨홀(인공, 수공 등), 통신구
4. 광케이블 접속함체, 인입분배기(Tap-off 등)
5.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

제5조(이전공사의 기본원칙)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원인제공자 부담의 이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체 이전공사와 부당하게 차별하여 비용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전공사의 공사비용은 법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원인제공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통신사업자와 원인제공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원인제공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을 원하는 경우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을 안내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설비이전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수행한 원인제공자 부담의 이전공사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 장 통신설비 이전절차

제7조(설비이전 요청) ① 원인제공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이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기통신설비 이전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이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설비 이전 신청 사유서 또는 시설관리기관에 제출한 이설 요청서
2. 이전대상 전기통신설비 사진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원인제공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또는 관련부서) 등을 통하여 설비이전을 신청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는 신청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이 경우 제7조제1항의 설비이전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원인제공자가 설비이전을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원인제공자가 시설관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2. 원인제공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 또는 관련부서 등에 신청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원인제공자의 설비이전 신청을 접수한 시설관리기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7조제1항의 이전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한 설비이전을 요청한 경우에도 원인제공자가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제3항제1호에 따라 원인제공자의 설비 이전 신청을 접수한 시설관리기관은 이전비용 청구 3일(영업일 기준) 이전에 원인제공자가 제출한 이설요청서 및 원인자 부담 공사 현황 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설비이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설비이전 절차)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이전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가능 여부 및 시기를 원인제공자에게 안내하고,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인제공자가 시설관리기관에 설비이전을 신청한 경우 시설관리기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설비이전을 요청한 날을 이전요청일로 한다.

② 설비이전 시기는 원인제공자의 설비이전 희망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설비이전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설비이전 희망일에 설비이전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향후 이전가능 시기를 원인제공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에게 안내하고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비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원인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통신주 또는 관로 등 전기통신설비 이설부지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이설 등의 조치 시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사업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전기통신설비의 이설 등을 위해 그 설비에 대한 통신서비스를 중단 해야 하거나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3. 그 밖에 설비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 ⑤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인접지역내 원인제공자가 소유한 토지(대체부지)를 제공하고, 해당 토지(대체부지)로 설비를 이전해도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 등에 영향이 없는 경우 설비이전을 할 수 있다.
- ⑥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인제공자에게 이전이 가능함을 통보한 경우, 이전에 필요한 공사비 산출내역을 포함한 설비이전 공사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원인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⑦ 기간통신사업자가 원인제공자에게 제공하는 공사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설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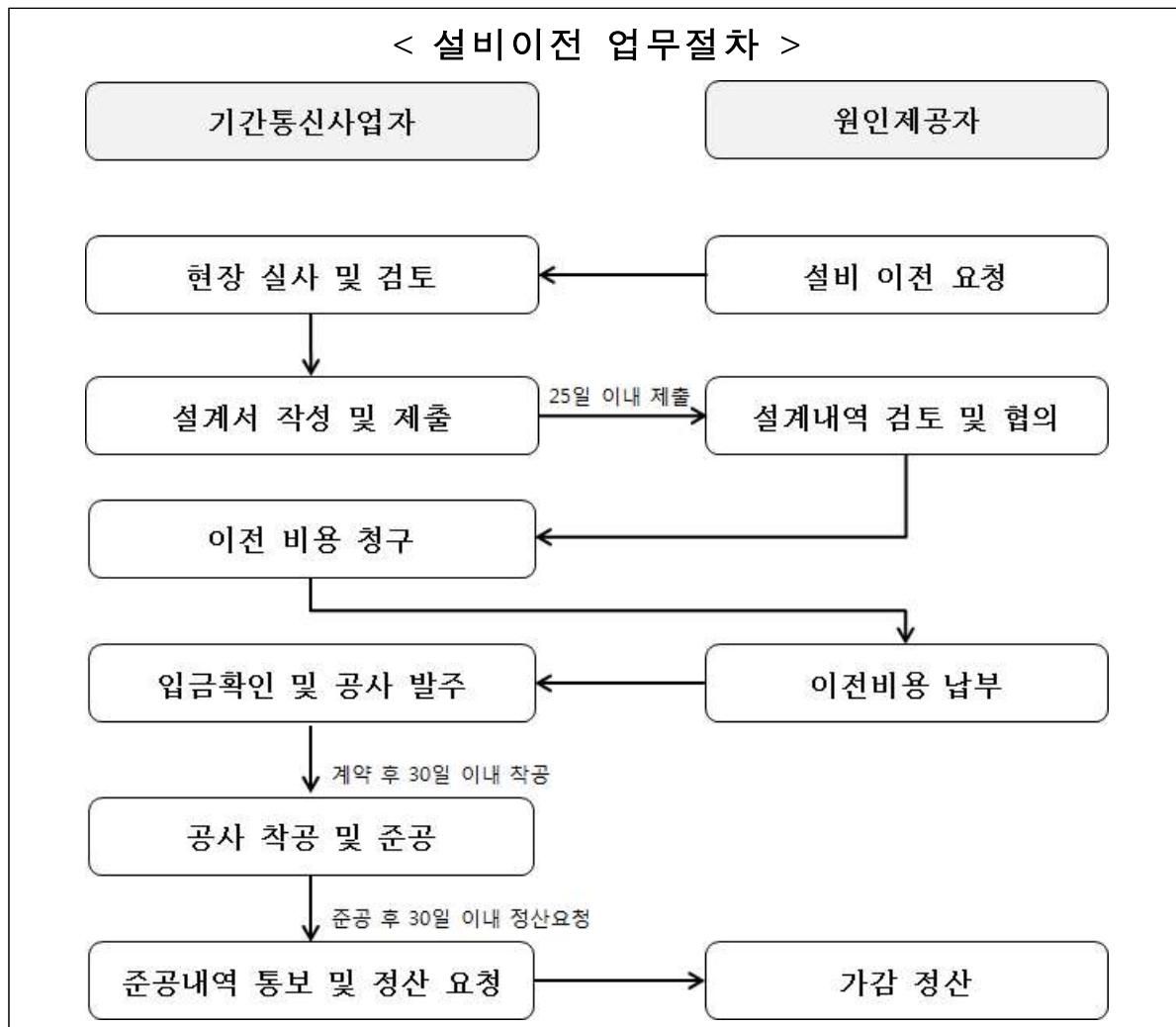
2. 산출내역서(설계도면에 의한 자재량, 노무비를 산출한 서류)
3. 공사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를 기반으로 계산된 공사비 내역서)

⑧ 기간통신사업자는 원인제공자 또는 시설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호일정 등에 따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 당사자간 협의한 경우
2. 기상여건 등의 사유로 인해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3. 현장조사 결과 보강공사가 필요한 경우

4. 시설관리기관의 설비이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거나 변경된 경우

⑨ 원인제공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통보한 이전대상 설비의 이전 가능 여부 및 공사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공동현장실사 등 관련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원인제공자의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8조의2(통신사업자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설관리기관과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지역별로 이전공사 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지역협의체는 대표사업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대표사업자는 이전공사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공사 계약) ① 원인제공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로 합의하여 공사금액이 확정된 경우 표준계약서(양자간 합의된 계약서 포함) 또는 원인제공자에게 발송한 공문, 입금내역서 등을 통해 공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원인제공자와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사계약이 완료된 후 기간통신사업자가

안내한 입금기한내에 원인제공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은행 계좌로 공사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단, 입금기한은 양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원인제공자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원인제공자와 협의한 기간 내에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 착수) 기간통신사업자는 원인제공자로부터 공사비 입금이 완료 (별도로 입금시기를 합의하여 정한 경우 포함)되면, 정보통신공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긴급공사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단, 유찰로 인한 도급계약 지연, 시설관리기관의 착공이 지연되거나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사착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를 원인제공자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공사 착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공사비 정산) ① 공사가 완료되면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준공검사를 신청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준공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면, 30일 이내에 공사 준공·정산내역서를 준비하여 원인제공자와 이전공사 비용에 대한 정산을 시행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상호 협의된 기한 내에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전공사에 대한 정산결과 공사비용이 원인제공자가 기 납부한 공사비용보다 많은 경우 원인제공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은행계좌로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공사비용이 기 납부한 공사비용 보다 적은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원인제공자에게 해당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 3 장 공사비용 산정

제12조(공사비 산정원칙) 삭 제 <2018.02.09>

제13조(공사비 산출기준) ① 전기통신설비 이전과 관련한 공사비 산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3(정보통신공사의 산정기준)에 따라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른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 이전과 관련한 공사비 산출시 사업자 자체공사와 원인제공자 부담공사의 설계와 공사비 산출에 있어 동일한 절차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 야간공사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적용기준 중 '노임 및 품의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공사비 산정) ① 이전공사 비용은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원인제공자에게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공사비용 관련 산출근거 및 업무절차, 공사비 검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이전대상 설비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설계획에 따라 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거나 1년 이내에 이설계획이 확정된 경우 원인제공자 부담 이전공사의 이설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설계비 및 감리비)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3조에 따른 공사비 산정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설계비와 감리비를 산정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설계비 산정시 기본설계를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낙찰률 적용) 이전 공사비와 관련한 설계가격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행정자치부 회계예규를 근거로 산출하며, 낙찰가격 적용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심사 기준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적화된 설계기준 및 낙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 4 장 비용검증 신청 및 절차

- 제17조(전문기관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인제공자의 검증 요청시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이전 공사비 산출 적정성 여부 검증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원인제공자가 신청한 설비이전과 관련한 업무처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의의 노력은 다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이전 공사비 산출 제반서류를 전달받는 경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기한 내에 검증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인제공자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의2(민원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설비이전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간 발생하는 민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6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원인제공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간 발생하는 이전비용, 이전공사지연 등과 관련된 민원의 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 제18조(전문기관 선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설비이전 공사비 산출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공사비검증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업무수행체계
 2.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분야의 표준품셈 조사·연구 관련 실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외부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L)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증신청) ① 원인제공자는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공사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이전비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통신사업자와 원인제공자는 전문기관의 검증결과에 따른다. 다만, 소규모 공사(검증대상 총공사비 2,000만원 이하)는 검증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증결과 공사비가 과다 산정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하며,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공사비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증을 요청하고자 하는 원인제공자는 공사비용의 검증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신설비 이전비용 검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1.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검증신청 사유서

2. 이전대상 전기통신설비 사진

④ 제3항에 따라 이전공사 비용의 검증의뢰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검증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기통신공사비 산출 근거자료(엑셀로 작성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2. 수량산출서(설계도면에 의한 자재량, 노무량을 산출한 서류)

3. 공사원가계산서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 소규모 설비이전(도로굴착 미발생 공사)의 경우 7일 이내로 한다.

2. 도로공사를 수반하는 설비이전의 경우 15일 이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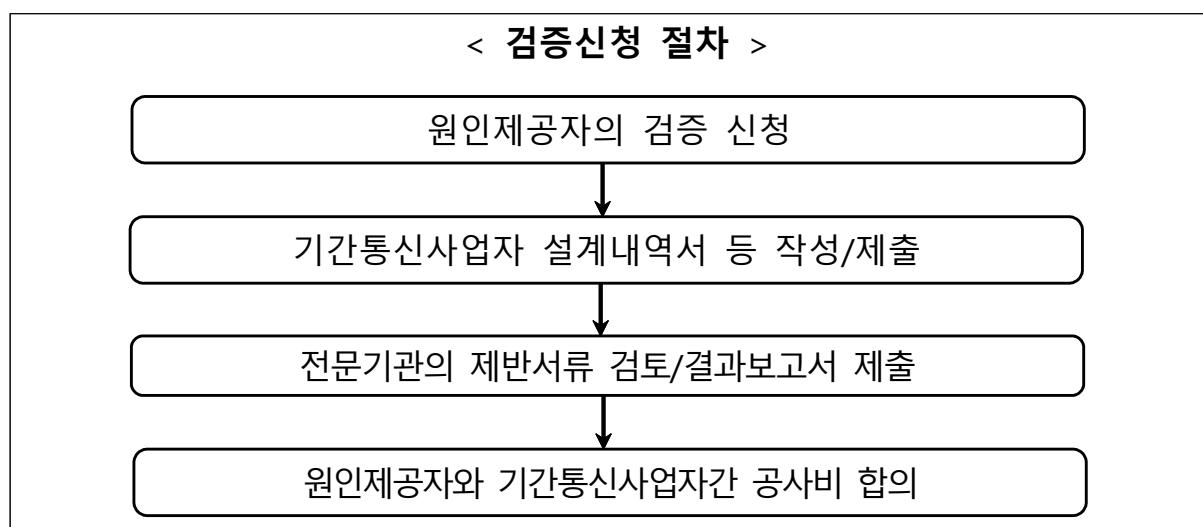
제20조(검증절차 및 처리기간) 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제19조제4항의 제반서류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은 설비이전에 필요한 공사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증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원인제공자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전문기관은 처리기간에 대해 원인제공자 및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필요시 검증관련 현장조사, 시설물 출입, 추가자료 제출 또는 열람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원인제공자와 기간통신사업자는 검증결과의 수용여부를 7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증 절차 및 방법 등 검증결과에 대해 문의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은 검증 절차 및 방법 등 검증결과와 관련된 문의사항 또는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경우 검토결과에 대해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제21조(검증비용) ① 원인제공자는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이전 공사비용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검증비용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증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 및 제2장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한다.

제 5 장 기 타

제22조(통계관리 및 정보제공)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원인제공자가 신청한 설비이전과 관련한 업무처리 현황 및 정산내역 등의 통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표준시장단가 적용) ①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시행이 된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산출하는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 및 기준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와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를 따른다.

부 칙 <2016.08.23.>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2.09.>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비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운영기준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되는 원인제공자 부담 이전공사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10.15.>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비 검증) 신청서

귀하

| | |
|-------------|--|
| 전기통신설비 명칭 | |
| 전기통신설비 소재지 | |
| 토지 지번 | |
| 토지 소유자 | |
|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 | |

상기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이전(공사비 겸증)을 신청하며, 제반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

(연락처 전화 :

휴대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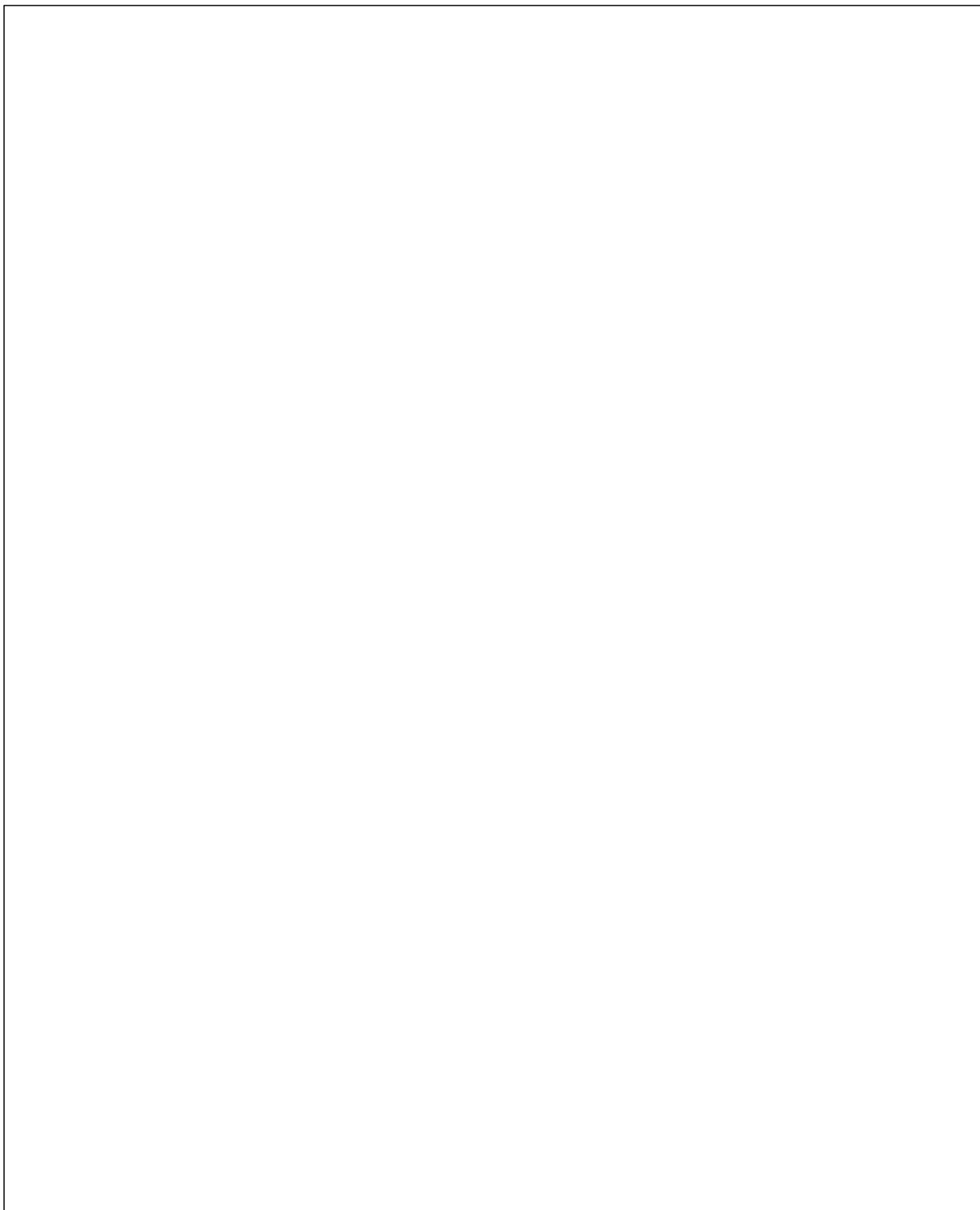
붙임 : 1. 설비 이전(공사비 검증) 신청 사유서
2. 설비 이전(공사비 검증) 대상 전기통신설비 사진

[붙임 1]

설비이전(검증) 신청 사유서

[붙임 2]

설비이전(검증) 대상 전기통신설비 사진



[별지 제2호 서식]

설비이전 공사비 검증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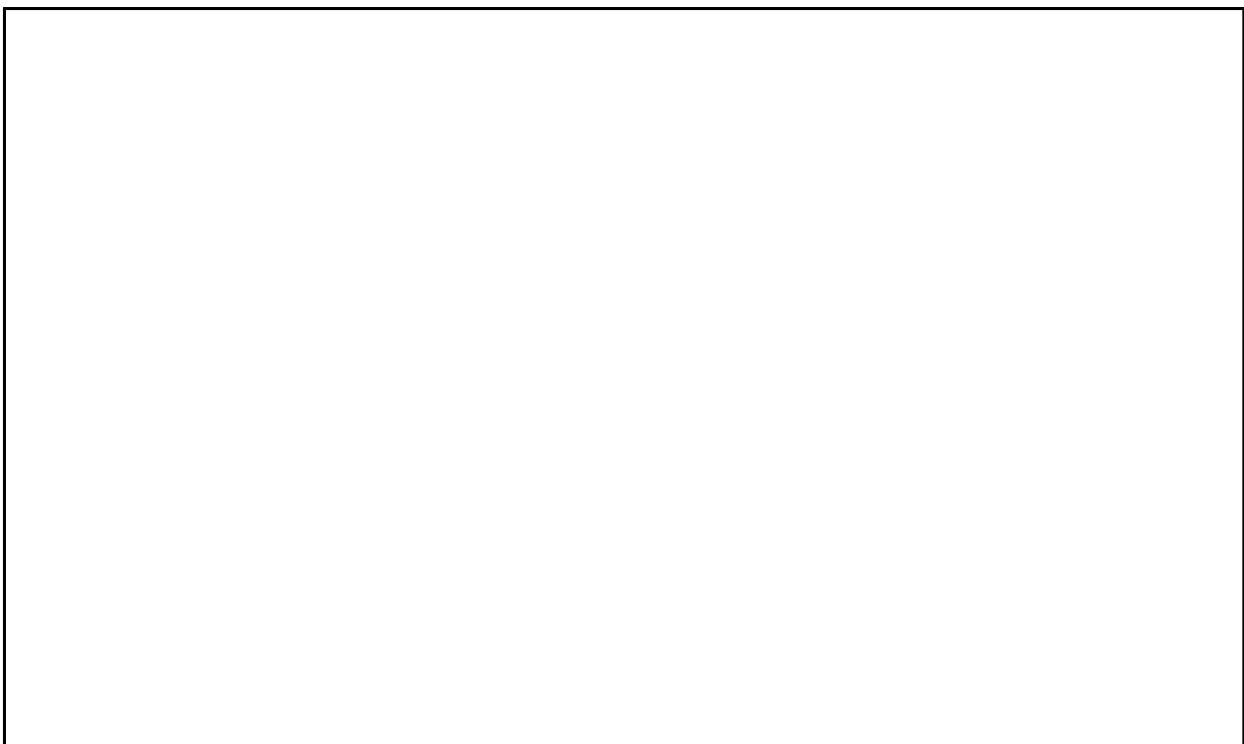
1. 보고서 개요

| | | | |
|------------------|-------|-------|-----------|
| 공 사 명 | | | |
| 접 수 일 | | 제 출 일 | |
| 검 토 기 관 | 상 호 | 대 표 자 | |
| | 등록번호 | 연 락 처 | (사 무 실) |
| | 검토자성명 | | (핸 드 폰) |

2. 검 토 내 용

| 검토항목 | 세 부 검 토 내 용 | 비고 (산출근거) |
|--------------------|-------------|--------------|
| 설계물량(수량) 적정성 여부 | | |
| 재료비 산출 적정성 여부 | | |
| 노무비 산출 적정성 여부 | | |

3. 종합 의견



4. 원인제공자 유의사항 또는 확인해야 될 사항

